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제정 1988년10월29일 건설부고시 제 465호

개정 1995년 8월18일 건설부고시 제1995-286호

개정 1995년 8월24일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93호

건설기계명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장비)	특수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	특수건설기계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특수건설기계 (수목이식기)
건설기계의 범위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것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것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것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굴착·재생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수목채취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차대위에 원동기, 호퍼, 아스팔트 살포장치, 아스팔트 혼합제(아스콘) 이송장치등을 가진 도로보수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호퍼의 용량(m ³)으로 표시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파쇄장치와 원동기등을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최대 파쇄폭(m)으로 표시	도로의 포장상태등 노면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등을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자중(톤)으로 표시	콘크리트를 혼합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1회 혼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생산량(m ³)으로 표시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굴착·재생하는 기계로서 가열장치, 굴착장치, 재생장치 등을 가진 것이 이에 속함. 규격은 최대굴착폭(mm)으로 표시	수목의 채취 및 운반장치와 원동기등을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작업 가능상태의 자중(톤)으로 표시
건설기계의 구조및성능의기준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적용	해당부분적용	해당부분적용
건설기계조종사의면허	아스팔트피니셔 조종사면허 또는 로울러 조종사 면허	모우터그레이더 조종사 면허	로울러 조종사 면허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대형 면허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대형 면허	로우더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표시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 (26)다음에 “거” 라는글자를 넣어등록번호를 표시 (예:26거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 (26)다음에 “너” 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 (예:26너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 (26)다음에 “더”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 (예:26더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 (26)다음에 “러” 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 (예:26러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 (26)다음에 “머” 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 (예:26머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26)다음에 “어”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 (예:26어1234)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스팔트살포기”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우터 그레이더”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로울러”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에 준하여적용(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 준하여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로우더”에 준하여 적용

부칙(제1995-286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수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제1995-293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등 폐지) 기타중기의 지정 건설부고시 제465호(88. 10. 5), 제469호(89. 8.17), 제725호(91. 11. 29), 제1992-192호(92. 4. 23), 제1992-543 (92. 10. 1.), 제1993-286(93. 8. 6.)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